

## 신탁계약서 변경전후표

| 변경 전  | 변경 후   |
|---|--|
| 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C4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1.1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7</p> <p>6. C5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1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7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Ce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</p> <p>1) 2010.05.03~2011.05.02: 연 1000분의 13</p> <p>2) 2011.05.03~2012.05.02: 연 1000분의 12</p> <p>3) 2012.05.03~2013.05.02: 연 1000분의 11</p> <p>4) 2013.05.03~2014.05.02: 연 1000분의 1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7</p> | 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C4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11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7</p> <p>6. C5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1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7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Ce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5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</p> <p>1) 2010.05.03~2011.05.02: 연 1000분의 13</p> <p>2) 2011.05.03~2012.05.02: 연 1000분의 12</p> <p>3) 2012.05.03~2013.05.02: 연 1000분의 11</p> <p>4) 2013.05.03이후: 연 1000분의 10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7</p> |
| <신 설>   | <u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u>  |